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일반전형)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6-319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1. 채용 개요

연번	채용 분야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1	공무직 (시험연구원)	1명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 업무

□ 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

○ 반려동물 바이러스질병 검사 보조

○ 반려동물 바이러스질병 진단용 동물세포주 배양 및 유지

○ 바이러스질병진단실 실험장비 관리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 자격

○ 만18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26.10.1.)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무직 (시험연구원)	- (응시자격) 공통 자격 外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우대자격) 관련 분야 전공자·자격취득자,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 요건을 갖춘 자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6.10.22.예정)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4. 채용 절차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결정
‘26.10.1(목)~ ’26.10.8(목)		‘26.10.1(목)~ ’26.10.8(목)		‘26.10.15(목)		‘26.10.22(목)		(발표일) ‘26.10.23(금)

○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공무직 (시험연구원)	○ 적극적 서류전형(3배수 초과 지원 시)

계	평가점수			가점	
	자격부합도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우대사항 (자격증 등)	법정·사회형평
100점 + 가점	20	40	40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 3명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6.10.16(금) 개별 통보
	○ 소극적 서류전형(3배수 이하 지원 시 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6.10.16(금) 개별 통보

○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공무직 (시험연구원)	○ 평정요소를 탁월(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미흡(5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예의 품행 및 성실성, 3.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가산점이 높은자 > 서류심사점수 높은자 > 면접심사위원간 합의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공무직(시험연구원)	1명	2명(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5.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6.10.1.(목) ~ '26.10.8.(목) 18:00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등
원서접수 기간	'26.10.1.(목) ~ '26.10.8.(목) 18:00까지	E-mail 접수
서류전형	'26.10.15.(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6.10.16.(금)	개별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면접전형	'26.10.22.(목)	
최종합격자 발표일	'26.10.23.(금)	개별통보(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채용 예정일	최종 합격자와 협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음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 '26.10.1.(목) ~ '26.10.8.(목) 18:00

○ 원서 접수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원수접수 체크리스트 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1페이지에 여러개 스캔 방지)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hoo3593@korea.kr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친·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에 대한 동의서 - 가점 지표 해당 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당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지참
최종합격자 발표 후	- 주민등록등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기재 초본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7. 근무조건 등

채용 분야	계약기간	근무지	근무시간	보수
공무직 (시험연구원)	계약체결일 ~ 정년 (무기계약직)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약독물법의·세균 질병진단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	기본급 2,156,880원 (수당별도)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보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름

8.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농림축산검역보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수습기간

○ 합격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 임용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10.8.(목)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054-912-0364)에게 문의

붙임 1. 입사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5. 친·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7. 가점 지표 사항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및 반환청구서 서식 1부. 끝.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체크리스트)

연번	구분	제출 서류명	확인
1	**공통**	[붙임1] 공무직근로자 입사지원서	
2	**공통**	[붙임2] 자기소개서	
3	**공통**	[붙임3] 직무수행계획서	
4	**공통**	[붙임4]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5	**공통**	[붙임5] 친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	
6	해당자	[붙임5 별첨] (친·인척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7	**공통**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8	해당자	저소득층이거나 국가유공자법 상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	
9	해당자	가점 관련 증빙서류 및 자격증 사본	

[붙임 1]

공무직근로자 입사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구분	공무직근로자	지원직무	□**질병진단과-시험연구원**	접수번호	미기재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e-mail)			
추가항목	□ 장애인 □ 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 채용공고시 대상자 요건 고지*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지원직무와 관련된 교육사항만 기재하고 관련 없는 교육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가점 지표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인)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본인작성)

본인소개, 업무관련 경력 및 실적, 기관 및 직무 적합성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분량 5매 이내**)
컴퓨터 문서입력 프로그램 활용(13p) 또는 자필 작성

[붙임 3]

직무수행계획서

(본인작성)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무직근무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수행계획(비전, 발전가능성, 혁신방안, 고객만족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분량 5매 이내**)
컴퓨터 문서입력 프로그램 활용(13p) 또는 자필 작성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본 기관의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1번 '없음' 체크 시 '비해당'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없음 □ 있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합격취소 또는 당연면직·해고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본 정보는 면접 등 심사 자료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 (인 또는 서명)

[붙임 5]

친 · 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고용노동부는『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2018. 11. 1.)』및『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추가지침(2019. 12. 13.)』을 시달하여 **채용비리가 방지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채용에** 지원할 때, 지원자의 **친·인척**이 우리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친·인척의 재직 여부** ---------- **있음** □ **없음** □

※ 친·인척과의 관계(있음 체크한 경우) : _____ 촌

*** 친·인척 인적사항(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작성)**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 :

다. 근무부서 :

라. 직 위 :

※ 지원자는 해당되는 친·인척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친·인척용)'를 징구하여 본 서류와 함께 제출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본인은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 시 채용기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취소 또는 당연면직·해고 등으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하며,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또는 당연면직·해고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정보는 면접위원 제척·기피, 채용비리 방지·조사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심사 자료로는 쓰이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별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친·인척용)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 (인 또는 서명)

[붙임 5 별첨]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친 · 인척용)

본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채용기관'이라 함)의 채용 모집에 지원한 000의 친·인척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기관이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친·인척 본인**

▪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 직장전화 ▪ 부 서

▪ 직 위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채용기관)** : 채용 심사위원 등의 제척·기피제 운영
채용비리 여부 조사

* 동의한 개인정보를 통하여 채용기관, 제3자 등이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음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필수사항) :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직장전화 ----- **동의□ 비동의□**
- 상기 동의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동의□ 비동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불합격자의 친·인척)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파기할 때까지 보관
- (합격자의 친·인척) 인사관리자료로 보존(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친·인척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응시원서 접수 제한 및 계약 거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 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지원자 본인

▪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e-mail			
▪ 직 장		▪ 직 위	
▪ 직장전화		▪ 연락가능 팩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직원 채용 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경력 제반사항, 가족사항, 학력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포함, 민감정보는 필요 시 포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불합격자)채용서류의 반환 대상은 청구기간(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 180일 이내)이 지난 경우 즉시 파기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파기
- (합격자)채용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응시 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 7]

가점 지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가점 5점** 산정
- **저소득층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접수 마감일까지 2년 이상인 대상자는 **가점 3점** 산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가점 3점** 산정

※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 가점은 전환·경쟁채용에 각각 적용되며, **서류·면접전형별로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 가점은 해당되는 항목별 가점 부여(중복가점) 가능

직종별 지원요건 및 가점 지표

직 종	지원요건	가 점 항 목		가점	비 고
시험 연구원	없음	* 실험실근무 경력 6개월 이상 근무자		3점	-
		* 정보화자격증소유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3점	
		* 관련 학위 소유자 - 수의학, 생물학, 생명과학 등 관련 계열의 학력 소지자	전문대	2점	
			학사	3점	
			석사 이상	5점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기준 요건을 갖춘 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의 요건		3점	

주 1. 경력 또는 자격증에 따른 가점 합계는 최대 5점으로 함

2. 가점 자격증은 지원자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5점 자격증과 3점 자격증 동시 제출 시 5점 자격증 1개만 인정)

 * 자격증을 제외한 가점(경력·학위 등)은 자격증 가점과 중복 산정 가능

3. 해당 지표에 대한 가점은 전환·경쟁채용에 각각 적용되며, 서류전형에만 가점 적용

[붙임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2026년 10월 23일 예정)로부터 30일(2026년 11월 23일 예정)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4-912-0383) 또는 이메일(hoo3593@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2026년 11월 23일 예정)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붙임 8 별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